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조례 제2247호

붙임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4. 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7.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목욕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9조제1호 중 “별표 8”을 “별표 8과 별표 9”로 한다.

별표 1 ~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 남 체 육 공 원	· 진남경기장 · 진남체육관 · 야구장 · 실내야구연습장 · 인라인롤러경기장 · 씨름장 · 유도장 · 테니스장 · 실내테니스장 · 국궁장 · 보조운동장 · 족구장 · 게이트볼장 · 진남복합구장 · 진남배드민턴장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 남 수 영 장	· 실내수영장 · 다목적실	여수시 내동1길2 (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 마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장 애 인 국 민 체 육 센 터	· 다목적체육관 · 체력측정실 · 체력단련실 · 장애인목욕탕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웅 천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웅천중앙로 106
홍 국 체 육 관	· 홍국체육관	여수시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 돌산체육관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18
시 립 테 니 스 장	· 시립테니스장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 진모축구장 · 진모그라운드골프장 · 진모리틀야구장 · 진모풋살장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국 동 복 합 체 육 시 설	· 복합구장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울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 울촌장도파크골프장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55

[별표 2] 일반(연습) 이용료 (개정안)

(단위: 원)

구 분		일반인 (100%)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80%)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50%)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 (면제)	비 고
시설별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25,000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2,000	20,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4,000	15,000	〃	〃
	보조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진모)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망마-웅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500	1,200	750	〃	1명당
야구경기장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20,000	16,000	10,000	〃	실내이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750	〃	1명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 트	10,000	8,000	5,000	〃	1면당
	실외하드코 트	10,000	8,000	5,000	〃	〃
	실내하드코 트	15,000	12,000	7,500	〃	〃
진남배드민턴장		1,500	1,200	750		1명당
진남,홍국,돌산 체육권		30,000	24,000	15,000		구장당
족 구 장(실내)		10,000	8,000	5,000	〃	〃
게이트볼장		10,000	8,000	5,000	〃	〃
그라운드골프장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풋살장		25,000	20,000	12,500	“	“
유 도 장		10,000	8,000	5,000	〃	〃
씨 림 장		10,000	8,000	5,000	〃	〃
국 궁 장		1,500	1,200	750	〃	1면당
장애인 국민체 육센터	체력 측정실					장애인에 한함
	체력 단련실					〃
	장애인 목욕탕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8,000	30,000	30,000	강습료 : 12,500/월
	1회사용	4,000	3,200	2,000	1,500	
울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2,000	1,600	1,000	면제	관외 거주자 5,000원 36홀 기준

비고

1. 이용시간 :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위 이용료의 150%로 한다.
3. <삭 제 >다음의 각 목의 사람은 일반인 이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처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 송환 및 태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수영장
 -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단체입장 감경이용료는 1회 사용 시 일반인 3,000원, 청소년·군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1,500원으로 한다.
 -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헬스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이내 2,000원으로 한다. 또한,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 라. 수영장 강습료는 월 12,500원으로 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정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월 6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일반인 월 9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 1명의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7. <삭 제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 ~~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월 55,000원으로 한다.~~
 - ~~나. 개인용 사물함 이용요금은 월 5,000원으로 한다.~~

[별표 3]

부속시설이용료(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기	라이트 시설 (구장별 조정)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 당)	※ 기타시설은 시설용량 고려하여 별도 산정
		진남경기장	90,000	80,000	
		진남체육관	40,000	14,000	
		진남야구장	50,000	20,000	
		진남실내야구연습장	10,000	1,500	
		진남테니스장(실외)	6,000	1,000	
		진남테니스장(실내)	6,000	1,000	
		진남보조축구장	30,000	8,000	
		진남족구장	2,000	1,000	
		진남복합구장	30,000	8,000	
		홍국체육관	16,000	4,000	
		돌산체육관	9,000	3,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7,000	1,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인라인경기장	50,000	20,000	
		진남수영장 회의실	10,000	5,000	
	일 반 전 기	기본료(1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전 광 판	대형 (주경기장) 5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소형 (주경기장) 3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냉 난 방 료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당)		
	진남체육관	40,000	20,000		
	홍국체육관	30,000	10,000		
	돌산체육관	20,000	5,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20,000	5,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가스사용료)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		
음 향 설 비 (1일)	마이크 3개 기본 제공(1개√추가√시 5,000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 50,000원 테니스장(정구장), 기타 : 30,000원				
공 한 지 (3.3㎡당)	(7,000원×사용일수)			상행위 목적	

[별표 4] 행사사용료 (개정안)

시설별		구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 진모)			60,000	90,000	120,000	180,000	구장당
실내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구경기장			60,000	90,000	-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구장당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5,000	-	-	"
진남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족구장(실내)			20,000	30,000	-	-	"
게이트볼장			20,000	30,000	-	-	"
그라운드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풋살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
유도장			40,000	60,000	-	-	"
씨름장			40,000	60,000	-	-	"
국궁장			40,000	60,000	-	-	"
울촌장도파크 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2. <삭 제 2022. 9. 2.>
3. 행사 참여인원(선수 및 사용자 측의 참여인원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가. 행사 참여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30%
 - 나. 행사 참여인원이 500~9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 다.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70%
4. 행사시설물의 사전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사용료는 행사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표 9]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분	내 용	반 환 기 준
월권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일권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 (생략)</p> <p>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p> <p>8. (생략)</p> <p>9. <u>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u></p>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u></p> <p>4. <u>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u></p> <p>8.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10. ~ 12. (생략)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항 신설 2021. 3. 15.>

1. ~ 8. (생략)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9. ~ 11.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목욕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본항 신설 2021. 3. 15.>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④ -----

1. ~ 8. (현행과 같음)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다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
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
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
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
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

④ (생략)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을 별표 8에 따라 반환

2. ~ 5. (생략)

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

-----.

1. -----

----- 별표 8과 별표 9-----

2. ~ 5. (현행과 같음)